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 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77 | 2025.03.17 (2025.03.10~2025.03.16)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2025.03.10~2025.03.16)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과학기술(AI+S&T<Science&Technology>)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전략은 전세계적인 인공지능 활용 연구개발 체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산하고자 마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제1회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②**'25년 혁신제품 지정계획 및 구매목표 설정**, ③**'25년 제1차 혁신제품 지정 및 연장**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방송법 상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항에 신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추가하는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해외제조업소, 매장 등에 직접 주문하여 직배송하는 형태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도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으로 관리됨을 명확히 하는 등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은 제품검사를 통해 인증받은 실내장식물만 사용하도록 개선하고, 그간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던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설차단기 설치 기준, 주된 출입구 및 비상구 설치기준을 명확화하는 등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발행 보통주에 대하여 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기업의 경영권 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써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하여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자와 경영권 방어를 시도하는 자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투자계약증권등에 해당되는 토큰증권의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촉진에 이바지하였던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2인)**」 ,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관련 정보 확인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4인)**」 ,

국외 계열회사를 이용한 순환출자도 금지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0인)**」 ,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여 내국인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제품, 미래형 이동·운송 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결제방식 이외에 다른 결제방식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다른 결제방식의 이용과 관련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1인)**」 ,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는 정보보호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에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우선구매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보호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4인)**」 ,

콘텐츠 소비 형태 및 플랫폼 변화에 맞춰 유튜브, 숏폼, 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영상콘텐츠 생태계를 포괄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내 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정하의원·임오경의원 등 17인)**」 ,

무공해자동차를 단순 전기·수소자동차 등이 아닌 환경적으로 우수한 전기·수소자동차 등을 무공해자동차로 정의하고, 무공해자동차의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법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

현행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완전히 전환하되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도입하도록 하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의원 등 13인)**」 ,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되,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3/20(목) 안건 심의를 위한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정무위>에서 홈플러스 MBK 파트너스 관련 긴급현안질의가 진행되며, <농해수위>, <복지위>, <환노위> 등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세계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 과학기술 활성화 방안」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마련(기획재정부) 9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11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11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1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1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12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12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12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2
-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해양수산부) 13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13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방부) 1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4
-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1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소방청) 16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17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1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의원 등 13인) 1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2인) 18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18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6인) 19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4인) 2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0인) 20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0인) 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22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3인) 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의원 등 10인) 23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의원 등 10인) 24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1인) 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4인) 25
- 생명안전기본법안(박주민의원 · 한창민의의원 · 용혜인의의원 등 77인) 25
-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정하의원 · 임오경의원 등 17인) 26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4인) 26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의원 등 12인) 27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2인) 28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욱의원 등 10인) 28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29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3인) 29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3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의원 등 13인) 3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31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의원 등 11인) 31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20인) 3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3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의원 등 10인) 33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1인) 33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본회의 일정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76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에너지·자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 [조세] 예방적 외환검사 확대 등 외국환거래 위반행위 규제 강화 동향
- [기업인수/합병]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26 (2025년 3월 2째주)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세계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 과학기술 활성화 방안」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대 유망기술 분야 특화 인공지능 모형 개발 등을 인공지능 + 과학기술(AI+S&T) 혁신 가속화 - 전용 컴퓨팅 자원 확충, 고품질 데이터 확충 등 인공지능 + 과학기술(AI+S&T) 기반 강화 	2025-03-12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과학기술(AI+S&T<Science&Technology>)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이번 전략은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활용 연구개발 체계(R&D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산하고자 마련되었다고 밝힘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첫째, 8대 유망기술 분야 특화 인공지능 모형 개발, 과학기술 지식 창출에 특화된 차세대 인공지능+과학기술 기반기술 개발 등을 통해 인공지능+과학기술 혁신을 가속화

먼저, 주요 국가전략기술 및 미래 유망기술 8개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모형을 개발함. 개발된 인공지능 모형은 신구조·신물성 탐색, 반복실험 수행 및 대량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분야별 고난이도 연구 수행을 지원하게 되며, 인공지능 활용 연구가 비교적 활성화된 혁신 신약, 차세대 신소재 분야와 같은 인공지능 활용 연구개발 혁신 성공사례를 과학기술 전반에 확산해 나감

이와 함께, 초연산, 원리 규명 등 새로운 과학기술 지식 창출에 특화된 차세대 인공지능+과학기술 기반기술 개발도 추진함. 앞으로 인공지능이 연구개발 지원에 더욱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학적 원리를 도출하는 등 과학적 발견에 최적화하고, 더욱 고차원의 난제를 다룰 수 있는 기반기술을 개발함

둘째, 인공지능+과학기술 전용 컴퓨팅 자원 확충, 고품질 데이터 확충, 인공지능 이해력을 갖춘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등 인공지능+과학기술 기반을 강화

먼저, 인공지능 활용 연구를 위한 컴퓨팅 수요에 대응하여 인공지능+과학기술 전용 컴퓨팅 자원을 확충함. 중·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요구하는 연구 지원을 위한 600페타플롭스(600PF)급 슈퍼컴퓨터 6호기를 연내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를 개시함. 또한, 소규모 연산자원을 요구하는 연구에 특화하여 40페타플롭스(40PF)급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출연연 등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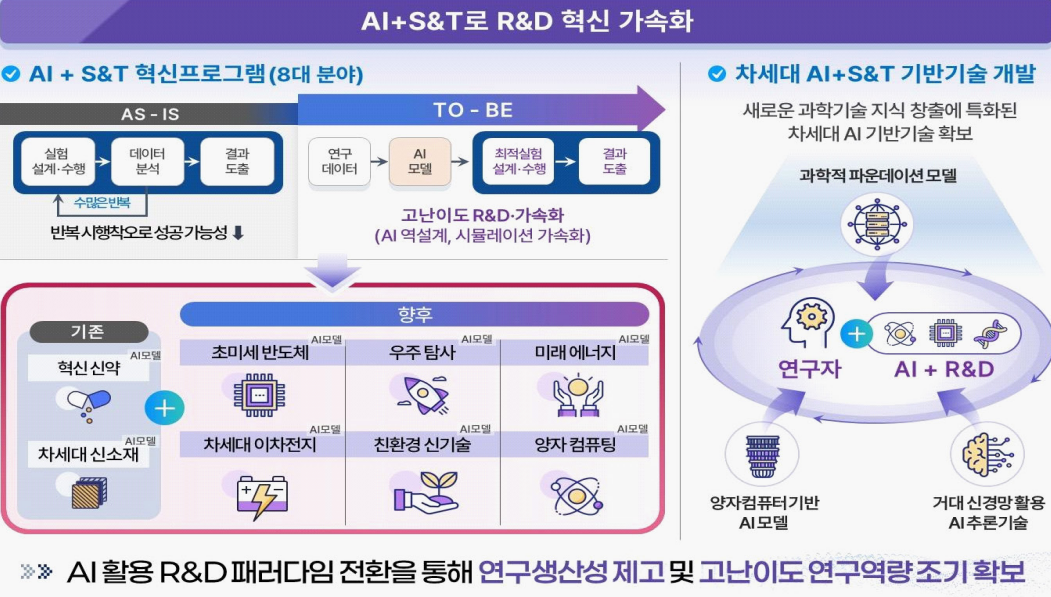
또한, 고품질 데이터 구축 환경을 조성한다. 연구과정에서 생성·수집된 연구데이터와 인공지능 모형(AI모델)을 국내 산·학·연 연구자가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연구개발을 통해 데이터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소재, 생명공학(바이오) 분야는 기존 분야별 데이터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을 중심으로 고품질 데이터를 확충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인공지능 활용 연구개발 체계(패러다임) 전환은 인공지능 기술력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역량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이번 전략을 바탕으로 연구현장의 인공지능 내재화를 통해 차별화된 원천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신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힘

[AI + S&T 활성화 방안 요약]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한 **AI+S&T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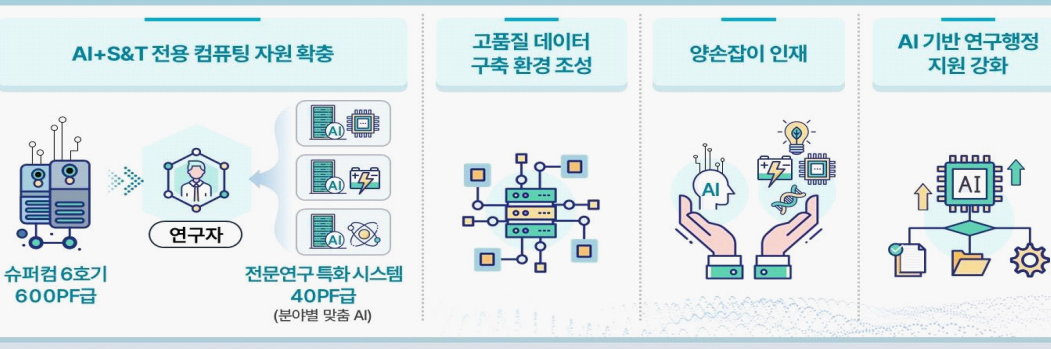
AI+S&T 혁신 가속화



AI+S&T로 사회문제 해결



AI+S&T 인프라 강화



기획재정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마련

- 2025년 제1회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분쟁조정 대상 확대, 청구가능기간 연장 등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 혁신제품 생산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지원 위한 구매목표액 7,985억원

2025-03-12

기획재정부는 「제1회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②'25년 혁신제품 지정계획 및 구매목표 설정, ③'25년 제1차 혁신제품 지정 및 연장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힘

공공조달 참여기업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가계약 관련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하였음.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국가(공공기관 포함)와 공공조달 참여기업간의 분쟁에 있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을 대체하여 합리적인 조정대안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되었음

최근 급증하는 분쟁조정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15인 이내인 전체 위원 정원을 30인 이내로 확대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국방 방산분야 소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임. 이와 함께 영세 조달기업 관련 사안이 많은 소액사건은 심사 절차를 통합하고 간이심사로 대체하여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임

공공조달 참여기업에게 분쟁조정을 통한 권리구제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음

첫째, 현재 10개인 분쟁조정사유는 국가계약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지연배상금', '선금반환'을 추가하여 12개로 늘어남

둘째, 물품 용역 등 다른 계약보다 분쟁조정 대상 금액기준이 높은 '종합공사'의 기준은 10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이상으로 낮춤

셋째, 조달기업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발주기관의 장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각각 연장

아울러, 피청구인이 분쟁조정결과 수용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이의제기 시 계약심의위원회 자문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청구인의 피청구인 의견서 열람권을 보장하는 등 청구인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들도 다수 포함되었음

한편, 혁신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노력으로 '20년 345개 지정을 시작으로 전년도까지 2,280개의 혁신제품을 지정하였고, 지정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 지원을 위한 '25년 혁신제품 구매목표액을 7,985억원으로 설정하였음. 정부, 지자체, 등 기관별 목표 금액은 구매 여건과 전년도 실적 달성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설정하였으며, 목표 달성 여부를 정부업무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함으로써 혁신제품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빠르게 적용되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25년 혁신제품 구매목표 설정으로 기관 우선구매를 통해 혁신제품 제조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힘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2025-03-14 시행

일반회사보다 높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받던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여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을 개정(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공포, 2023. 1. 1. 시행)하면서 내국법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지주회사가 상장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로 마련해 주기 위하여 해당 유예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기획재정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025-03-14 시행
-------	--------------	---------------

현장 세무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를 독려하기 위하여 국세의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조세탈루 방지를 위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기획재정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2025-03-14 시행
-------	------------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성실납세신고 특례 규정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항공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 및 일몰기한을 각각 1년 연장하며, 가상자산을 악용한 부정무역 및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2025-03-14 시행
-------	----------------	---------------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및 감면 종합한도를 상향하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 기업의 투자활동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노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기획재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2025-03-14 시행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불균등 감자 등의 자본거래를 추가하여 이를 이용한 편법 증여를 방지하고, 친족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하며, 투자조합이 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인적사항, 해당 권리 등의 보유·거래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2025-07-01 시행 예정

온라인 거래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대행·중개 등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도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할 의무를 부여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6-12 시행 예정

종전에는 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 후에는 폐업한 날부터 2년 이내(그 밖의 사유로 인한 폐업 후에는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하였으나 실패한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의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창업으로 인정함으로써 성실경영실패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창업생태계의 선순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3-11 시행

외국인투자기업의 새만금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 중 신용평가회사 등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기준과 자기자본 또는 총매출액 기준을 외국인투자기업의 요건이 아닌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하는 외국투자자의 요건으로 변경하는 한편,**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건축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범위를 3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늘리고, 도시계획·경관 또는 교통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3-11 시행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 등의 기능 제고와 항만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추가하고,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않도록 하여 민간의 항만 관련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항만구역 등에서 금지되는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행위를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축소하고, 입주기업체가 되려는 자와 수의계약을 통해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을 입주계약 체결 예정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5-03-13 시행

종전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조건부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허가권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유원시설업의 신고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 등의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국방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3.10. ~2025.04.21.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의 범위에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실국장급 공 무원을 추가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위산업기술의 반환·삭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며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 법률(법률 제20540호)이 2024.12.3일에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 기준 구체화 등
- ②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및 보호지침 수립 시반영해야 할 필수사항 구체화
- ③ 방위산업기술 보호 계획 및 국외 유출 현황의 국회 제출 시기 명확화
- ④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무 위원회위원수 확대(25명 이내 → 28명 이내)
- ⑤ 방사청장이 기술보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사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 문의처 : 국방부 전력정책과 (전화: 02-748-5316)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3.11. ~2025.04.21.
-------	------------------------	-----------------------------

자동차 기술발전 반영 및 대여사업계 경영부담 개선을 위해 운영패턴이 유사한 개인택시 수준으로 차령 완화하고 자동차 차령만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량 대폐차에 따른 차량 신규충당시 자동차 구입비용 경감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완화 (별표2제1호 개정)
 - 중형 및 대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차령을 각각 5년에서 7년, 8년에서 9년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한 차령을 적용받았던 전기 및 수소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차령을 9년으로 신설

②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 완화 (별표2의2 개정)

-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에 한정해 차량 출고 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 문의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총괄과 (전화: 044-201-3819, 팩스: 044-201-555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03.11.
~2025.04.16.

라디오·데이터·VOD 유형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하여 기존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도록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20473호, 2024. 10. 22)됨에 따라,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방송법 상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항에 신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추가하도록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문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전화: 044-203-3125, 팩스: 044-203-3489)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3.11.
~2025.04.21.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해외제조업소, 매장 등에 직접 주문하여 직배송하는 형태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도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으로 관리됨을 명확히 하고, 영업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처분 사유 및 내용 통지 절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행하는 수출식품등에 대한 안전성 지원 업무에 수출업소의 등록·유지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168, 팩스: 043-719-2150)

소방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03.13.
~2025.04.23.

현행 법령상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은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하나 제품에 대한 성능 확인 기준이 없으므로, 실제 제품의 성능을 담보하고 일선 완비 담당자가 육안으로 성능확인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품검사를 통해 인증받은 실내장식물만 사용하도록 개선하고, 그간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던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설차단기 설치 기준, 주된 출입구 및 비상구 설치기준을 명확화하여 법 집행상의 혼란과 민원분쟁을 방지하며, 자동문 설치 시 피난 장애 위험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 문의처 :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전화: 044-205-7445\)](tel:044-205-7445)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근혜 의원 등 12인)	2025-03-10 발의
---------	---	---------------

공익법인은 기부를 통해 정부나 기업이 직접 관여할 수 없거나 지원이 미비한 분야에서 사회 일반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가 특수관계인을 통한 지배력 확대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출연받은 재산 가액의 100분의 1 이상을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주식을 기부받은 공익법인은 주식의 배당금을 활용하여 공익 목적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 배당률이 매우 낮아 배당금만으로는 공익 목적 사업의 수행이 어려워 의무지출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 결과 기업들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고, 이는 기업의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 활동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발행 보통주에 대하여 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그 대신 공익법인 본연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유한 보통주 등에 대한 배당률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익법인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2 신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2025-03-12 발의
---------	--------------------------------	---------------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보유지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결과 주요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위협도 커지고 있음. 그런데 미국, 일본, 유럽,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에서는 차등의결권, 신주인수선택권 등 여러 유형의 경영권 안정화 수단을 도입·운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현행법은 그러한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적대적 M&A에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업의 경영권 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써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하여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자와 경영권 방어를 시도하는 자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 휘의원 등 13인)	2025-03-10 발의
-------	--	---------------

현행법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각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배수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 벌금 상한액은 별도로 두지 않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아 법원이 행위자의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22헌가6, 2024. 7. 18.)

이에 다른 법률과 같이 배수벌금형과 벌금상한액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안 제39조제1항)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등 12인)

2025-03-13 발의

현행법에 따른 ‘증권’ 중 투자계약증권 등 일부 증권(이하 “투자계약증권등”이라 함)은 그 권리의 내용이 비정형적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유통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려웠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이 발전되어 투자계약증권등도 원활하게 거래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3년 2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였고,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6개사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음

이에 투자계약증권등에 해당되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의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촉진에 이바지하였던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발행 규제에 한하여 투자계약증권등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유통 규제가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함 (안 제4조제1항)
- ②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일부 투자중개업자, 토큰증권의 발행인을 통하여 장외에서도 다수 투자자 간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함 (안 제166조제1항)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2025-03-13 발의

최근,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 등 글로벌 인공지능(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첨단의료, 모빌리티, 로봇틱스 등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신산업 분야, 재난 및 범죄예방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공익적 필요가 높은 분야 등에서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과 데이터 처리 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요청도 증가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국민 신뢰 및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강화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방안 등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때에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감정보 등의 처리로 인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요인 평가를 하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동일·유사한 심의·의결이 있었던 경우 등에는 심의·의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되 심의·의결한 주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이행 점검 등 엄격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8조의12 및 제28조의13 신설)

정무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6인)**

2025-03-14 발의

현행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서 제외하면서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하고 있는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로맨스스캠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사기범죄의 경우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에 포함되는 사례가 많아 피해자들이 현행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기존 보이스피싱이 사람들의 공포심이나 불안을 이용한 사기행위였다면, 로맨스스캠은 친교관계를 형성한 후 금전을 요구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행위로 발생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그 피해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적극적인 피해 예방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사수신행위를 제외한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사기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일회성으로 송금하거나 해외에 송금하는 경우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융사기를 예방하여 그 피해를 막고자 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2호 등)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이정현의원 등 14인)**

2025-03-14 발의

최근 현행법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용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Online Interface)에 관한 규제를 도입하였음. 이는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한 전자상거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 건수도 동반 상승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임

그러나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사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규제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관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자계시판서비스 제공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관련 정보 확인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여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의4 신설 등)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등 20인)**

2025-03-14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1조(상호출자금지) 및 제22조(순환출자금지)에서 “계열회사 사이의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그로 인하여 회사의 자본적 기초가 위태롭게 되고, 기업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며, 기업집단이 쉽게 형성·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음(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312 판결). 2020. 12. 29. 공정거래법 개정 당시 상호출자/순환출자가 금지되는 계열회사를 “국내 계열회사”로 한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법집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내 계열회사 위주로 상호출자/순환출자 규정을 적용해오고 있었기 때문임. 또한, 규제 대상을 국내 계열회사로 한정하고 있지만, 법 제36조의 “탈법행위 금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해외 계열회사를 통한 상호출자/순환출자 규제를 우회하는 행위를 자제하여 왔음

그러나 최근 고려아연-영풍 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해외 계열회사를 이용하여 순환출자의 외관을 작출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이것이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아닌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하지 못하고 있음

과거에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인 하이트진로 그룹은 일본 계열사를 활용하여 순환출자구조를 형성하였던 사례가 있었고, 2024년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9개의 국외 계열회사 총수는 7,558개로 국외 계열회사를 통해 상호/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할 유인과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계열회사를 이용한 순환출자 사례인 고려아연 사건에서 이를 탈법행위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많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국외 계열회사를 이용하여 신규 상호출자/순환출자를 시도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

과거 순환출자 금지를 국내 계열회사로 제한한 것은 해외 계열회사의 존재나 출자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인데, 현재 공시제도의 확대 도입으로 해외 계열회사의 출자구조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법 제28조제2항 등 참조), 순환출자 금지를 국내 계열회사로 한정해야 하는 실질적 어려움도 거의 없다고 할 것임. 이에 **국외 계열회사를 이용한 순환출자도 금지하여 순환출자 금지 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고 이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막고자 함** (안 제22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0인)

2025-03-05 발의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한 신규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며 정부가 고시하거나 민간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각각 타당성분석과 적격성조사를 거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고 있음

그런데 타당성분석과 적격성조사는 경제성 및 정책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는데 이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방법과 동일하고, 실무상 이러한 절차가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시에 수행되고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실시되는 적격성조사는 이를 거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이에 **적격성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재정사업으로 전환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2025-03-13 발의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 압력이 커지고 있음. 이로 인해 기업의 국내 투자 위축과 국내 일자리 감소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국내 주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대책이 요구됨

이에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여 내국인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제품, 미래형 이동·운송 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함

또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의 경우, 기존의 이월공제 외에도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100조의35, 제144조의2, 제144조의3, 제144조의4, 제144조의5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2025-03-14 발의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한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현행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출연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농어촌 성장·발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8조의3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2025-03-14 발의

최근 일부 기업들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하여 출산한 직원 등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직원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동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러한 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음. 그러나 출산휴가·육아휴직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업무 부담이 증가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원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안 제104조의36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
겸의원 등 13인)

2025-03-10 발의

최근 25세의 젊은 배우가 악성 보도와 댓글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함. 이에 따라 언론의 자성과 함께, 뉴스 콘텐츠를 유통하는 포털뉴스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상 포털뉴스는 단순한 뉴스 전달자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함)가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기사는 포털뉴스에서 검색 및 접근이 가능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현행법은 포털사이트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규정하고 정정보도등의 청구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있음. 포털이 정정보도 청구를 받으면 이를 기사 제공 언론사에 통보하고, 해당 언론사는 동일한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그러나, 반대로 언론사가 정정보도 청구를 받는 경우, 이를 포털사이트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포털뉴스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된 기사에 대한 접근이 가능함. 또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음. 이는 포털사이트보다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정정보도 청구가 더 많고, 언론사에게 정정보도등을 청구하는 경우보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피해자는 포털사이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에 따른 정보삭제 요청 등을 할 수 있음에도 포털뉴스를 통해 보도 및 유통되는 뉴스 기사에 대해서는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포털사이트 또는 언론사가 정정보도등을 청구받거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자가 된 경우 상호 통보를 의무화하고, 통보받은 경우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함. 또한, 피해자가 언론중재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삭제요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포털사이트는 해당 기사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에 따른 임의 임시조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조정기일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함

이를 통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뉴스를 유통하는 포털뉴스의 책임을 강화하고,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15조,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23조의2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2025-03-12 발의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같은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혐오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무분별하게 게재·유통되면서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나아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 또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70조제1항 및 제2항)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
원 등 10인)

2025-03-13 발의

국가전략기술은 미래 신산업 발전과 과학기술 주권 확립, 그리고 국민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의 안전보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최근 Deepseek 충격을 비롯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인재 양성 측면에서도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병역법」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규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시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의 기술육성주체에 우선 배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 인재 육성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종국적으로 국가안보에 보탬이 되고자 함 (안 제26조의2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1인)

2025-03-13 발의

현행법은 앱 마켓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앱 마켓 유통시장의 경쟁이 제한된 상황에서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사실상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와 관련한 규정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증개할 때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결제방식 이외에 다른 결제방식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다른 결제방식의 이용과 관련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9제2항·제3항 및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4인)

2025-03-14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정보보호인증제도가 의무인증제도가 아닌 임의인증제도로 규정되어 있어 해외 기업이 제조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정보보호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되고 있는 등 정보보호인증 실적이 저조함

이에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는 정보보호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이 중앙행정기관 등에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우선구매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보호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 등이 정보보호인증을 받을 유인을 높여 정보보호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48조의6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등)

행정안전위원회

생명안전기본법안(박주민의원·한창민의원·용혜인의원
등 77인)

2025-03-04 발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은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재난 및 각종 사고에 관한 주요 법령만으로는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생명안전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생명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 법은 안전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의 보장, 안전영향평가제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② “안전사고”란 재난을 비롯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함(안 제3조)
- ③ 모든 사람은 성별·종교·국적·인종·세대·지역·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현장 등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짐(안 제4조)
- ④ 국가등은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보장할 책무를 지고,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자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6조)
- ⑤ 정부는 안전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0조)
- ⑥ 국가등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국제적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련기준을 설정하고, 안전관련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13조)
- ⑦ 국가등은 안전사고의 원인과 대응 및 수습 과정의 적절성에 대하여 전문적·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 별도의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18조)
- ⑧ 국가등은 안전사고로 영향을 받은 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20조)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정하의
원·임오경의원 등 17인)

2025-03-11 발의

최근 콘텐츠 소비 형태 변화로 유튜브, 숏폼, 버추얼휴먼 등 뉴미디어영상콘텐츠가 신 성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국민의 85.1%가 유튜브 등 온라인영상채널 콘텐츠를 이용하였고 숏폼 콘텐츠 이용률은 69.6% 수준임. 또한, 온라인영상채널콘텐츠산업 종사자는 2022년 기준 3.6만명으로 국내에서도 자리잡고 있으나, 국내 숏폼 및 버추얼휴먼 시장은 초기 단계로 관련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법 규정이 없어 창작자 보호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콘텐츠 소비 형태 및 플랫폼 변화에 맞춰 유튜브, 숏폼, 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영상콘텐츠 생태계를 포괄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내 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
률안(위성곤의원 등 14인)

2025-03-12 발의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됨에 따라, 히트펌프 기술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히트펌프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 5억 톤(t) 감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할 때 기존 냉난방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음

실제로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히트펌프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행정·재정적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등 입법·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기술 발전 수준과 해외 정책 동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국제기구 기준을 맹목적으로 적용하거나 생산 에너지량 확보 및 전력 수급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도입을 소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적극적인 산업 진흥 정책이 미흡한 상황임. 이로 인해 히트펌프 신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이 미진하여 글로벌 산업 경쟁 및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뒤처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수열 및 공기열 등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열원이나 폐열 등 미활용 열원을 히트펌프(heat pump)를 사용하여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히트펌프 기술과 열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안 제2조제2호아목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2인)

2025-03-13 발의

현행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축물에 대하여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은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 등에 관한 사항이며, 특례 적용의 예외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음에도, 시행령에서 특례 적용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것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상위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화사업에 대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특례 적용 예외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특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44조제6항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2인)

2025-03-13 발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자원보유국의 수출통제를 통한 자원무기화, 전기차·재생에너지의 확산에 따른 핵심광물 수요 급증 등 전세계 에너지·자원시장의 질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핵심광물'을 정의하면서 '광물'만을 포함하고 있으나 광물뿐만 아니라 그 광산물, 즉, 리튬, 니켈 등이 탄산리튬, 황화니켈 등 화합물 형태로 생산·수입·전환·가공·수송·저장·판매되고 있는 광산물을 핵심광물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국내외 자원안보 위험요인,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 핵심자원의 공급망 취약점 및 대응방안 등을 포함하는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평가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출입 정보 등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등 현행법의 여러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핵심광물'의 범위에 광물뿐만 아니라 그 광산물을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국제협력사업·연구개발사업·인력양성 및 교육·홍보사업 관련 변화하는 에너지·자원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유사시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자원의 구매 및 조달 안전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호나목·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6조제1항제5호 등)

보건복지위원회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2025-03-10 발의

전공의는 의료기관 내에서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수련생 지위와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 지위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음. 이러한 이중적 지위로 인해 전공의는 1주일에 최대 80시간, 연속하여 최대 36시간을 수련을 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 등 근로자로서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전공의는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있어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최근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치료하던 전공의가 피해자 치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해 데이트폭력 가해자와 공동으로 4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2심 판결이 있었음. 이처럼 전공의는 교육을 받는 수련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수련 중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만 하는 상황임

이러한 열악한 수련환경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는 수련환경평가 거버넌스 체계에 있어서도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공의 육성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전공의의 처우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병원의 장이 의료사고·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마련과 의료사고·의료분쟁 발생 시 전공의에 대하여 법률지원 등 제공의 의무 및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수련시간 결정 및 휴게시간 등의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의 전공의 대표성 제고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4조의2·제16조의2 신설, 제6조, 제7조 및 제15조 등)

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2025-03-10 발의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420만대, 수소자동차 30만대를 보급하는 등 과감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공해자동차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지원, 의무 등 법·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제4장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내에 일반 자동차뿐만 아니라 무공해자동차까지 규율하고 있어 법체계가 복잡하고 국민에게 혼동을 초래하고 있음. 아울러, 무공해자동차 수요 창출과 충전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무공해자동차를 단순 전기·수소자동차 등이 아닌 환경적으로 우수한 전기·수소자동차 등을 무공해자동차로 정의하고, 무공해자동차의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법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무공해자동차 수요 창출, 충전시설 운영, 보조금 관리 등 무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안 제2조제15호의3·제76조의16부터 제76조의28까지 신설,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9까지 삭제 등)

환경노동위원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3인)

2025-03-10 발의

현행법은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목표로 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음. 이러한 목표는 자원의 고갈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접근 방식으로, 모든 단계에서 순환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음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포장재의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30%로 설정하는 등 지속 가능성과 자원 효율성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 및 순환 연료 사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적 노력은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순환 원료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 권한만 부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집행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음. 이로 인해 기업들이 순환 원료 사용을 지향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향성 설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제품의 지속 가능한 사용과 순환성 향상을 위해 제품의 생산 단계부터 이를 고려한 설계 및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생산자로 하여금 순환 원료 사용 확대와 친환경 원료 전환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순환적인 가치 창출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2025-03-11 발의

기후위기가 전 인류가 직면한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현행법은 정부가 재정 지출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국가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조세제도 운영에서도 친환경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조세지출, 즉 법률상 세제 감면 조치는 국세 분야에서만 개별세법상 380개, 조세지출예산서상 240여개에 이르며 그 규모도 연간 80조 원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후 영향 평가는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지방세 분야에 한해서만 서울·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며 결과적으로 일부 세제감면 조치가 온실가스 배출을 조장할 우려와 함께 조세 제도가 기후친화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임

이에 국가가 조세제도 뿐만 아니라 세제 감면 조치 역시 기후 친화적으로 운영하도록 원칙을 규정하고 **2028년부터 세제 감면 조치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시대적 과제가 된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57조)**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3
인)**

2025-03-11 발의

지난 2005년 정부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하는 폐단을 근절하여 임금채불을 줄이고,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연금소득 강화를 위해 현행법 제정과 함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규정상으로만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의무로 두고 있을 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기존 퇴직금제도 역시 강행성이 없어 현장에서는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임금체불의 40%가량이 퇴직금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완전히 전환하되,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도입하도록 함.** 또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사업장 규모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퇴직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퇴직금 체불을 줄이고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11조, 제38조, 제48조 등)**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2025-03-12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퇴직연금제도의 확산에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2 및 제48조제3항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2025-03-12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년을 둔 사업장은 대부분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현행 63세에서 2033년 65세로 늦춰지면서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 사이 격차가 더 벌어지는 ‘은퇴 후 소득 공백’ 문제가 본격 대두되고 있음

앞서 우리나라보다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의 경우, 법으로 고용 연장을 의무화하되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다양한 방식의 계속고용 방안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도를 연착륙시킨 바 있음

이에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되,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도록 하여 고용 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고용시장 양극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 (안 제21조, 제22조 등)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20인)

2025-03-12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으로 가족돌봄휴직(최장 90일)과 가족돌봄휴가(최장 10일)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신체적·정신적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하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자택 또는 의료기관에서 근로자가 가족의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는 등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사망이 임박한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임종을 지키기 위한 가족등 임종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2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6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2025-03-11 발의

현행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탑승보조 서비스 등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교통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뿐 이를 위반할 경우 교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규정 등 제재 수단이 부재하여 교통약자들에 대한 교통이용편의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제5호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2025-03-14 발의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조합장 등 조합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공공방식의 경우에는 조합방식과 달리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조합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공공방식도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조합방식처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합장 등 조합임원으로 선임 또는 연임된 경우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공공방식도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조합방식처럼 법률에 규정하여 명확히 하는 한편, 총회 개최 시 직접출석의 인정범위를 정비하는 등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1인)

2025-03-14 발의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면서, 미국과 중국에서는 상당한 완성도를 갖춘 자율주행자동차가 속속 등장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며, 적어도 지금까지는 상당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그런데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해서는 경쟁국과 비교하여 적지 않은 기술력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자칫 자율주행자동차 개발경쟁에서 뒤쳐질 경우 국내의 자동차산업 기반 자체가 급격히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자율주행자동차는 산업적인 중요성 이외에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완성도가 높아져 상용화가 된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감소와 그로인한 각종 사회적 편익이 크게 증가될 것임.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개발을 촉진해야 하는데,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규정이 상당한 까다로워 연구개발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기본적으로 비식별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하여 제한적으로 원본을 활용하고 있으나 그 과정과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실정임.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상 대규모의 개인정보 수집활용이 불가피한데, 적어도 연구개발 단계에서만이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제를 완화시켜 줄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자 또는 시스템개발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의 영상이 포함된 자율주행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술개발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자 함 (안 제20조의2 신설 등)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본회의	3/20(목) 14:00	- 안건 심의

2. 위원회 일정

구분	구분	일시	내용
정무위	전체회의	3/18(화) 10:00	- 홈플러스 MBK 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 법안소위	3/20(목) 10:00	- 법안 심사
복지위	전체회의	3/18(화) 10:30	- 법안 의결, 법안 상정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소위	3/18(화) 10: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3/20(목) 10:00	- 법안 의결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3/17(월) 09:30	재생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의 역할과 지원 방안	김원이·김정호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3/17(월) 14:00	국가연구데이터 관리·활용 촉진 법제화 추진을 위한 토론회	박충권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3/17(월) 14:00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본 배달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이강일·민병덕 의원실 등	의원회관 10간담회의 실
	3/18(화) 14:00	산재예방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분야 국가R&D 추진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	박홍배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3/19(수) 14:00	2025년 건설안전 국회토론회 : 중소 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우재준·안호영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3/19(수) 14:00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른 보호구역의 실태와 개선과제	안호영·어기구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3/20(목) 07:30	[한중의원연맹 2025 제2회 정책세미나]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下 북중러 협력의 현황과 전망	김태년·김성원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3/20(목) 13:30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 시대) 기계설비산업 발전 비전 2050 세미나	권영진·문진석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3/20(목) 14:00	AI·디지털 자산 혁신과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성장 전략	김재섭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3/21(금) 14:00	K-방산을 위한 평화방위기금 설립 국회 토론회	추미애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자료집 등	3/18(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66호(2025-3호) 발간	국회도서관	
	3/19(수)	「금주의 서평」 제720호(2025-11호) 발간		
	3/18(화)	「NABO Focus」 제97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76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3/12(수)	「이달의 입법민원」 (2025.2호)	국회사무처	
	3/10(월)	「Data+」 제4호(2025-4호)	국회도서관	
	3/11(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65호(2025-2호)		
	3/12(수)	「금주의 서평」 제719호(2025-10호)		
	3/11(화)	「NABO Focus」 제95호	국회예산정책처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2025.03.10~2025.03.16)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3/12(수)	에너지·자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3/12(수)	조세	예방적 외환검사 확대 등 외국환거래 위반행위 규제 강화 동향
3/13(목)	기업인수/합병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3/14(금)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26 (2025년 3월 2째주)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